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8월 23일’에서 ‘2027년 7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예규 제 402 호

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·공시에 관한 지침
일부개정예규안

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·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5조 중 “2024년 8월 23일”을 “2027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431호)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8월</u> <u>23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5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7월</u> <u>31일</u>-----.</p>